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0
----------	-------

발의연월일 : 2022. 1. 3.

발의자 : 김민기 · 강준현 · 김승남
김철민 · 민홍철 · 박성준
이탄희 · 이학영 · 임종성
최혜영 · 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2층 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여객 운송량이 70% 이상 높으면서도 여객 운송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법률 제 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호 중 “저상(底床)버스”를 “저상(底床) 및 2층 버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u>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2. <u>저상(底床) 및 2층 버스</u>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